

(붙임 7)

교육훈련비 등 반환기준

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교육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	교육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육비 등의 전액
	교육 시작 후부터 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육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	이미 납부한 교육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	없음
<p>비고</p> <p>- 총 교육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육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/p>		